



묘석판매업자 고객명단의 영업비밀 해당성 및 부정 취득에 관한 사건

06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도쿄지방법원	사건번호	平成10년(와) 제18253호
판결 일자	2000. 11. 13.	판결 결과	원고 일부승소
원고	주식회사 나카야마세키료(中山石渠)		
피고	1. 주식회사 세이와도(聖和堂), 2. B, 3. C, 4. D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민법		
영업 비밀	잠정고객명단(전화 번호부 발취), 고객정보, 성지(聖地)사용계약서, 내산자(來山者) 명단, 가공도 및 투시도, 묘비원가표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비밀관리성, 유용성, 비공지성, 부정경쟁행위, 부정취득		

02 사건 개요

원고는 석재의 가공, 판매 및 석공사 시공 청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B는 원고회사의 전 종업원으로서 전화 영업 등의 업무에, 피고 C는 원고회사의 전 종업원으로서 주로 묘지 용지를 확보하는 업무 등에, 피고 D는 원고회사의 전 종업원으로서 방문고객의 응대 등의 업무에 각 종사한 바 있으며, 피고회사는 묘지·공원묘지의 소개, 알선, 중개, 묘비·석제품의 판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6. 12. 4. 피고 B 및 C에 의해 설립되었다. 피고 B 및 C는 각각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이다.

원고는 피고 B, C, D가 원고의 영업자료에 포함된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반출하여 피고 회사가 이를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각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03 주요 쟁점

원 고	⇔	피 고
<p>본건 영업자료(잠정고객명단, 고객정보, 성지 사용계약서, 내산자 명단, 가공도 및 투시도, 묘비원가표)는 비밀관리성, 유용성, 비공지성을 충족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한다.</p>		<p>본건 영업자료는 비밀관리성, 유용성, 비공지성을 충족하지 않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p>
<p>피고 B, C는 피고 회사의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건 영업자료를 부정하게 반출하였고, 피고 D는 내산자 명단을 피고 B, C에게 누설하여 피고 회사에 원고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입수시켰으며, 피고 회사는 위 불법취득 사실을 알고 본건 영업자료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여 단기간에 많은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피고 B, C, D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4호, 피고 회사의 행위는 동법 2조 1항 5호 각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피고들의 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p>		<p>피고 B, C, D는 본건 영업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고, 피고 회사가 고객과 계약할 수 있었던 것은 본건 영업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들의 영업 노력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p>
<p>C는 원고 재직 중 본건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여 피고 회사로 이전하였고, 피고는 위 정보를 사용하여 덤핑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고객 이탈, 가격 인하 압박 등에 의한 손해를 가하고 있다.</p>		<p>원고 주장의 사실은 부인한다.</p>

04 판결 요지

원고의 사무실 내에는 잠금 가능한 락커가 설치되어, "잠정고객명단(전화번호부 발췌)"과 "고객 정보"가 보관되어 있었다. "(예약) 성지사용계약서" 및 "내산자 명단"은 직원들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 내의 H 영업과장의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었다. "가공도, 투시도"는 사무실 내 책장에 파일로 보관되어 있었다. "묘비원가표"는 사무실 내의 원고 도쿄본사의 책임자인 I 또는 H 영업과장의 책상에 보관되어 있었다. 또한 원고에서는 신규채용 직원에게, 원고가 보관하는 영업 자료에 대해 영업활동 이외의 사용 금지를

철저하게 지도하고 있었다. 이상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본건 영업자료는 원고에서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본건 영업 자료는 모두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잠정고객명단(전화번호부 발취)", "고객 정보" 및 "내산자 명단"은 묘비 판매업자의 영업활동에 활용 가치가 높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잠정고객명단(전화번호부 발취)", "고객정보", "내산자 명단" 및 "(예약) 성지사용계약서"는 원고의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사항이 기재되어, 비공지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가공도, 투시도" 및 "묘비원가표"는 기재된 사항의 성격, 내용에 비추어 비공지였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 B, C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4호 소정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에, 피고 D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4호 소정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특정인에게 제시하는 행위에, 피고회사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5호 소정의, 부정취득행위가 게재한 것을 알고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에 각 해당한다.

05 Key Point

영업비밀의 요건으로서 비밀관리성, 유용성 및 비공지성이 각각의 영업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된 사례이다.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4호 소정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및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특정인에게 제시하는 행위, 동법 2조 1항 5호 소정의, 부정취득행위가 게재한 것을 알고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에 각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이다.
